

6. 건설기계관리법중개정법률

법률 제5,728호 1999. 1. 29

개정이유

건설기계의 무분별한 해체로 환경이 오염되고 주요 부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건설기계의 안전도가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자동차폐차업의 경우와 같이 건설기계폐기업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,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이전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, 기타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건설기계의 폐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종류에 건설기계폐기업을 추가하고, 건설기계폐기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시·도지사로부터 폐기요청을 받은 때의 절차를 정함(법 제2조제2호 및 제34조의3).
- 나. 건설기계의 정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에는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비행위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(법 제2조4호)
- 다.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종전에는

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앰으로써 건설기계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면허취득이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(법 제27조제5호).

- 라. 건설기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(법 제32조의2).
- 마.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건설기계를 무단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시·도지사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매각 또는 폐기 등의 강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(법 제33조 제3항 및 제34조의2).

※ 시행일 :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(1999. 7. 30).

주택회보